일본의 영상저작물 스포일러와 저작권 문제 -패스트무비를 중심으로-

김경숙 | 상명대학교 교수

I. 개요

스포일러(spoiler)는 영화, 드라마, 책 같은 이야기의 핵심 플롯이나 결말, 반전 등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 또는 그러한 정보나 콘텐츠를 뜻한다.[1] 줄거리의 중요한 부분이 공개되면, 창작자가 의도한 방식대로 이야기를 경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작품을 처음 경험할 때 느낄 수 있는 긴장감, 충격, 감동 등 핵심 요소가 훼손된다. 일본에서는 이를 네타바레(ネタバレ)라고 하는데, 네타(ネタ)는 개그나 이야기의 '소재나 내용'을 뜻하며, 바레(バレ)는 바레루(ばれる)에서 왔으며, '들통나다, 밝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상저작물 스포일러는 전체 줄거리를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로 블로그 등에 게시하기도 하며, 보통은 패스트 무비를 게시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영상저작물의 대표적인 스포일러로서 '패스트 무비(fast movie)'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의 일부 영상이나 스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자막이나 내레이션 등을 추가하여 영화를 직접 시청하지 않아도 전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약 10분 내외로 요약하여 업로드한 짧은 영상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패스트 무비(ファスト映画)'라고 부른다.[2] '패스트 무비(fast movie)'의 '패스트(fast)'는 시간의 짧음이나 편리함을 의미한다. 주문 후 대기 시간이 짧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는 패스트 푸드(fast food)나,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 짧은 주기로 생산・판매되는 저가 의류를 의미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에 비유해,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영화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든 동영상에 붙여진 이름이다. 패스

1. https://en.wikipedia.org/wiki/Spoiler_%28media%29?utm_source=chatgpt.com
2. https://dic.pixiv.net/a/%E3%83%95%E3%82%A1%E3%82%B9%E3%83%88%E6%98%A0%E7%94%BB

트 푸드나 패스트 패션이 반드시 불법을 의미하지는 않는 반면, 타인의 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다수의 캡처 이미지를 차용하여 제작된 패스트 무비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패스트 무비의 본격적 등장은 2020년 전후 '팬데믹'으로 인한 '집콕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여기에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무료로 패스트 무비를 많이 보면 이득"이라는 인식, 화제가 된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줄거리만이라도 알고 싶어 하는 수요, 짧은 시간 안에 마치 영화 한 편을 모두 본 듯한 만족감을 주는 점 등이 2020년 전후 패스트 무비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3]

이러한 패스트 무비와 같은 스포일러는 단순한 줄거리 요약을 넘어 보통은 영화의 결말까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영화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 유통 경로를 통한 영상물 관람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권리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4]

또한, 스포일러에 무단 복제된 이미지, 스크립트, 영상 등을 활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줄거리를 포함한 리뷰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II. 피해 사례 및 관련 소송

1. 피해 사례

2021년 보도된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의 조사에 따르면, 약 55개의 계정에서 2,100편이 넘는 패스트 무비가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한 편당 조회 수가 수백만 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으며, 게시자는 이러한 조회 수를 바탕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패스트 무비를 시청한 이용자들은 원본 영상물을 별도로 시청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권리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3. "ファスト映画問題から考える映画の未来」映画感想TikToker・しんのすけインタビュー" 映画ナタリー. (2021.7.5.) https://natalie.mu/eiga/column/435140

4. "ファスト映画とは？急増の背景とZ世代に刺さる動画の制作について解説" ゼネラルアサヒ(2023.7.20.) https://www.generalasahi.co.jp/cd/movie/topics/fastmovie/

보게 된다. CODA는 이로 인한 피해액을 약 956억 엔으로 추산하고 있다.[5]

유튜브에 게시된 다수의 패스트 무비는 권리자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란에 원작 영상물의 제목을 명시하지 않거나, 스틸 이미지를 다수 활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ID(Content ID)의 감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패스트 무비가 영상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일본방송협회(NHK)는 2021년 6월 20일 'NHK 뉴스 7'을 통해 보도하였으며, 이 보도 이후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패스트 무비를 삭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NHK 보도 사흘 뒤인 6월 23일, 미야기현 경찰청은 홋카이도 삿포로시와 도쿄도 시부야구에 거주하는 남녀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신 고질라(シン・ゴジラ)』를 포함해 총 13개 영화사의 저작권이 있는 54편의 영화를 무단 편집해 패스트 무비로 제작한 뒤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영상들의 누적 조회 수는 1,000만 회를 넘어섰으며, 피의자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려 고급 타워형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6]

또한, 영상저작물을 텍스트로 스포일러 한 5명에 대해서 2025년 5월 20일, 미야기현 경찰본부와 미나미산리쿠 경찰서가 센다이시에 거주하는 남성 사업자를 포함한 5명과 해당 운영 회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센다이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7]

2. 패스트 무비 관련 소송

(1) 형사소송

2021년 6월 23일, 미야기현 경찰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3명은 모두 센다이 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021년 11월 16일, 센다이 지방법원은 이 3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선고 형량은 피고인 각각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엔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엔이었고, 3명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센

5. "「ファスト映画」投稿急増 映画産業界に危機感 法的措置", CODA(2021.6.20.) https://coda-cj.jp/news/416/

6. 谷井将人, "「ファスト映画」投稿者に初の有罪判決著作権侵害申告の実績ない映画会社狙い組織的犯行" itmedia (2021年11月16日)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2111/16/news156.html

7. "Five People and a Company Referred to Prosecutors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Posting Full Movie Summaries Online Without Authorization" CODA(2025.5.21.)https://coda-cj.jp/en/news/725/

다이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

2021년 11월 16일 센다이 지방법원이 3명에게 내린 유죄 판결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들 피고인들 3명은 적어도 700만 엔의 광고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의 총액은 350만 엔에 불과하고, 또한, 3명 모두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실형을 면했다.

그러나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 형사 판결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은 여전히 침해자의 손에 남아 있게 되며, 실형을 면한 초범의 저작권 침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어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이들 3명이 운영하던 패스트 무비 채널에서 피해 작품의 총 재생 횟수는 1,000만 회 이상이었으며, 20억 엔 이상의 손해에 대한 조치도 필요했다.

이에 2022년 5월 19일에 카도카와(KADOKAWA)가 일반사단법인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CODA), 일반사단법인 일본영상소프트협회(JVA)의 회원사 12개사와 함께, 피고인 3명을 상대로 총 5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8]

같은 해 11월 17일, 동경지방법원은 영상 회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정하며, 영상저작물 게시자 2명에게 총 5억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9]

이 사건은 일본에서 패스트 무비를 게시한 자를 체포하여 민・형사 소송이 진행된 첫 사례이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패스트 무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고조시킨 사건이다.[10]

III. 영상저작물 스포일러의 저작권 문제

1. 저작권 침해

스포일러를 제작・게시하는 일부 사람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거나, 오히려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어 업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

8. "ファスト映画に関する損害賠償請求訴訟の勝訴判決について", KADOKAWA(2022年11月17日). https://group.kadokawa.co.jp/information/news_release/2022111701.html
9. 東京地方裁判所 令和4年11月17日判決 令４（ワ）１２０６２号
10. "「ファスト映画」投稿の疑いで逮捕宮城県警、全国で初" 朝日新聞(2021年6月23日) https://www.asahi.com/articles/ASP6R65GYP6RUNHB00N.html

는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1]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가 패스트 무비를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는 과정에서는, 원본 영상저작물의 일부나 스틸 이미지만을 사용하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 행위와 완성된 영상의 게시 행위 자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집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영상저작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12] 또한, 이렇게 복제한 영화를 짧은 영상으로 재편집하거나(일부는 정지화면의 연속으로 구성되기도 함), 줄거리를 소개하는 자막이나 내레이션을 삽입하는 행위는 번안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13]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14]

제작된 패스트 무비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15]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16]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17] 법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18] 아울러 민사적으로도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문제 될 수 있다.[19]

---

11. “１０分で結末「ファスト映画」はびこる背景投稿者が語った「錯覚」とは #ネットの落とし穴”, 時事ドットコム(2021年7月1日) https://www.jiji.com/jc/v4?id=202107fehh0001
12. 일본저작권법 제21조(복제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진다.”
13. 일본저작권법 제27조(번역권, 번악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화화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개작하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진다.”
14. 일본저작권법 제20조(동일성유지권), 제1항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 및 그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변경, 삭제 또는 기타의 개변을 받지 아니한다.”
15. 일본저작권법 제23조(공중송신권) 제1항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 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하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진다.
제2항 저작자는 공중송신되는 자신의 저작물을 수신 장치 등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진다.
16. 저작권법 제113조(침해간주 행위) 제6항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의 회피(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에 의해 제한된 저작물 등의 시청을 해당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행위(저작권자 등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음 조항 및 제12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도 동일하다.)를 행하는 행위는,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에 관한 연구 또는 기술의 개발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에 관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17. 일본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18. 일본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19. 일본저작권법 제112조, 일본 민법 제709조, 제703조, 제704조.

2. 저작권 제한사유: '인용'에의 해당 여부

영상저작물 스포일러를 게시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인용의 범위 내이므로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에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의 감상이나 비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타인의 저작물 인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도, 비평, 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라 인용되는 저작물의 소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종관계(인용하는 측이 주, 인용되는 측이 종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관련 판례로는 서적의 주요한 구성자료로서 타인의 수기, 논문을 복제하여 게재한 행위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20], 그리고 그림 12점을 복제하여 카타로그에 수록한 사안에 대해서 복제된 그림들은 그림 자체를 감상하기 위함이고 카타로그 내용에 종속되는 관계는 아니므로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21]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패스트 무비는 인용 부분과 그 외 부분 간의 주종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도나 비평이라는 목적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패스트 무비에서 사용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인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22]

문부과학성 또한 "매우 짧은 내용 소개, 또는 영화의 영상이나 스틸 이미지를 감상이나 논평을 위한 수단으로 일부 종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도, "영화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업로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단순히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

20. 東京地方裁判所 昭和44年(ワ)9353号(民青の告白事件)
21.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9年(ネ)2293号(藤田画伯事件)
22. "批評ではなく、単に広告収益を得るため?…"倍速視聴"が広まる中、悪質な「ファスト映画」動画にメス", ABEMA TIMES (2021年6月22日).

3.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비방과 중상모략 등의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에는 이른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23]이 제정되었고,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 침해와 같은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란, 동법 제5조에 따라 서버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청구를 위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 즉 권리 침해의 명백성과 정당한 사유의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 등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한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후, 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보 유통의 주요 기반이 변화하면서,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내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에 내재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시행된 개정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서는 '발신자 정보공개 명령'이라는 새로운 재판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신자를 보다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인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역시 간소화 · 신속화되어 권리 침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2024년에는 기존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을 ≪정보유통플랫폼 대응법(情報流通プラットフォーム対処法)≫[24]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통상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총무대신이 지정한 '대규모 정보유통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삭제 요청에 응답할 의무, 삭제 기준의 수립 및 공개 의무 등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다.

---

23. 이 법의 정식명칭은 「특정 전기통신역무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이다.

24. 이 법의 정식명칭은 「특정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대응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発生する権利侵害等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이다.

IV.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한 리뷰 형식을 가장하여 영상저작물을 무단 활용한 뒤,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한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25] 이 사건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와 상업적 수익 추구라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패스트 무비를 제작 · 게시하는 다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일본의 관련 소송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에서는 광고 수익으로 700만 엔가량을 얻은 게시자에게 그 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5억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이는 패스트 무비와 같은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로 이해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을 확대 재편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등을 조속히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대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플랫폼 차원의 사전적 · 사후적 조치에 불과한 법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패스트 무비와 같은 형태의 콘텐츠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간편한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원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뿐 아니라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5. 이경희,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연합뉴스 2025.07.24.)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18100331555